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11 선고 2023가단13061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노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대 1,015㎡ 중 별지도면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지상 목조, 브릭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1.94㎡를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 61.94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20. 1. 10.부터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주택을 철거하고 그 주택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년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